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호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는 부존자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는 달리 각종 서비스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매우 크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보급 확대 및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함.(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2(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 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 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 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 료의 효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사용료) - 제32조(대부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1. 기업지원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재산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한 업무시설 용도의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시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발전사업자의 사업타당성을 통해 자의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비용예측은 불가

4. 작성자

경제수도추진본부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